

# 행정안전부 법률사무종사(실무수습) 변호사 최종 합격자 공고

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할 실무수습 변호사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5월 20일

행정안전부 장관

## 1. 최종 합격자

연번	응시번호	근무부서
1	001	이행송무관리과
2	007	법무담당관실

## 2.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

- 주민등록등본 1부.
  - 기본증명서(상세)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. (주민번호 뒷자리 포함)
  - 최종학력 증명서 1부.
  - 서약서 1부.(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) ※ 「붙임1」 서식
- ※ 합격자 통지 후라도 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에서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 처리하고,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## 3. 제출기간 및 방법

- 제출 기간 : 2022. 5. 23.(월) ~ 2022. 5. 25.(수)
- 제출 방법 : 우편 제출
- ※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, 809호 법무담당관실
-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(044-205-148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붙임1>

# 서 약 서

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에 준하여 아래 채용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함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022. . .

작성자 : 성명

(서명)